KOSHA GUIDE

C - 25 - 2018

## 5. 판정시기

보관장소에서 현장으로 반입 전에 재사용 여부를 판단한다.

#### 6. 성능기준과 시험방법

- (1) "수리 또는 정비를 거친 가설기자재"의 재사용 가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를 실시한다.
- (2) 시험방법은 가설기자재 안전인증규격과 자율안전확인규격에 따르되, 성능기준은 안전인증규격과 자율안전확인규격의 100% 이상으로 한다.

단, 안전인증규격과 자율안전확인규격에 없는 성능기준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.

여기서, "안전인증규격과 자율안전확인규격의 100% 이상"에 대한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(안전인증의 취소 등) ①항과 제35조의3(자율안전 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등) ①항의 내용에 준하여 따른다.

## 7. 시험체의 선정

시험체는 재사용으로 판정된 가설기자재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.

※ 시험빈도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-450호 "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" 중 가설기자재 항목에 의거 준용한다.

# 8. 표시

성능시험 결과 재사용으로 판정된 경우 잘 보이는 곳에 『**재사용 가**』의 표시를 한다.

## 9. 품목별 점검 기준

품목별 점검기준은 <부록 1>에 따른다.